#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98

발의연월일: 2019. 1. 2.

발 의 자: 송옥주·황주홍·이상헌

윤관석 • 박찬대 • 서형수

신경민 · 윤후덕 · 심재권

유승희 • 백혜련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 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그러 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 비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,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 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 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7조"를 "제16조의2, 제17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6조 및 제17조"를 "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"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방사선안전건축물의 인증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,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  - ③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
- 2.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
- 3. 인증유효기간
- 4. 수수료
- 5.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, 지정 절차, 업무범위 및 지정 취소
- 6.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
- 7.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
-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 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 를 표시하고,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 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 자는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 이 적어야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6조제2항"을 "제16조제2항, 제16조의2제2항"으로, "협의"를 "협의(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6조제2항"을 "제16조제2항, 제16조의2제2항"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6호 중 "제16조"를 "제16조, 제16조의2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제7호"

를 "제7호, 제7호의2"로 한다.

7의2.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5조의2(녹색건축물의 유지·관 제15조의2(녹색건축물의 유지·관 리)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리) -----관리자는 제12조, 제14조, 제14 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 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 의2, 제17조-----야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, 시· 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·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6조 및 제17 ----. -----제16조, 제16조의 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 2 및 제17조-----한다. <신 설> 제16조의2(방사선안전건축물의 인증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 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 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 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
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, 방사 선안전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 임할 수 있다.

- ③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 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.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
- 2.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
- 3. 인증유효기간
- <u>4.</u> 수수료
- 5.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, 지정 절차, 업무범위및 지정 취소
- 6.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 검이나 실태조사
- 7.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
- ⑤
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

   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

제19조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) 국 지 토교통부장관은 <u>제16조제2항</u>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<u>협</u>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20조(인증의 취소) ① <u>제16조제</u> 제 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 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

	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	대
	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	을
	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, 「	건
	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	물
	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	련
	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	
	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	
	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	
	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	
	없이 적어야 한다.	<u>- 11</u>
	<u> </u>	
''	제16조제2학	
	<u>제16조의2제2항</u>	
	의(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경	
	<u>는 제외한다)</u>	
	1. ~ 5. (현행과 같음)	
	20조(인증의 취소) ① <u>제16조</u>	제
	<u> 2항, 제16조의2제2항</u>	

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- 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6.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<u>제1</u>
    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  - 7. (생략)

<신 설>

$\circ$		$\circ$	<b>(→1</b> ]	コト
Ŏ.	•	9.	(생	략)

	1. ~ 4. (현행과 같음)
	② (현행과 같음)
제	41조(과태료) ①
	1. ~ 5. (현행과 같음)
	6
	제1
	<u></u> <u>6</u> 조, 제16조의2

- 7. (현행과 같음)
- 7의2.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의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점부한 자
- 8. 9. (현행과 같음)
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부과·징수한다.
- 1. (생 략)
- 2.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
   <u>제7호</u> 및 제8호에 따른 과태
   료: 허가권자
- 3. (생략)

2
·.
1. (현행과 같음)
2
제7호, 제7호의2
3. (현행과 같음)